

직 권 조 치 결 과 공 고 문

「주민등록법」 제20조제7항 및 제20조의2제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 하였음을
공고합니다.

2024년 05월 08일

팔용동장



세대주성명	성명 생년월일	주소	직권조치사항 직권조치일자
조 *강	조 *강 1980-05-28	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사화로17번길 (팔용동)	무단전출거주불명등록 2024-05-08